##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80 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: 강기윤 • 윤영석 • 전봉민

임병헌 • 박성중 • 백종헌

서범수 • 이인선 • 김선교

김희곤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·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 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차 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.

이에 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·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3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험·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험·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시험・검사기관 지정의 유	제7조(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
효기간 등) ① 제6조제1항에 따	효기간 등) ①
라 지정된 시험・검사기관의	
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	
받은 날부터 <u>3년</u> 으로 한다.	<u>4년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